서울특별시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9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다. 상정결과 :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가. 제안이유

○ 유망 신진디자이너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인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 패션 전문기관 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 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주요 위탁내용

- 위치·규모 : 중구 신당동 유어스 5층 / 1,637 m²('09.12월 개관)
- 입주대상 : 창업 5년 이내의 신진패션디자이너 50명
- 입주기간 : 6개월(최장 24개월 입주가능)
- 매 6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기간 연장여부 결정(하위 10% 교체)
- 지원내용 : 창작공간 및 전문교육 제공, 샘플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주요시설 : 창작실(50개), 공동작업실, 포토스튜디오, 세미나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3 ~ 2016. 2)
- 주요업무
 - 창작스튜디오 입주 디자이너 선발 및 입·퇴거 관리
 - 입주 디자이너 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입주 디자이너 성과평가 및 전문교육 실시
 - 정규 졸업디자이너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창작스튜디오 창작실, 공동작업실 등 시설 및 장비 관리
- 소요예산 : 850백만원(2012년) 820백만원(2013년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2012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문화산업과-855, 2012. 2. 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09.4.13 ~ 2012.2.28(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12.3.1 ~ 2013.2.28(1년, 주식회사 PFIN)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유망 신진패션디자이너의 효과적 창작환경 제 공 및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를 위한 실질적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업계 독립진출 성장발판 제공을 위한 신진패션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청년 패션인력의 창업 활성화 및 브랜드 운영 안정화를 위 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패션분야 전문성 및 오랜 기간 축적된 업계 자체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업임.
- 또한, 입주 디자이너 전담인력 상시배치를 통한 효과적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디자이너 맞춤 밀착지원이 가능한 진단·컨설팅이 필요하므로 패션업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본 동의안은 유망 신진디자이너에게 효과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신생 브랜드의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업계 독립진출의 성장발판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시설인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안임.

○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입주 디자이너 선발 및 입·퇴거 관리, 입주 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창작실, 공동작업실, 포토스튜디오 등 시설 및 장비관 리 등으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및 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며

신진디자이너들에게 효과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맞춤 밀착지원하기 위해서 는 패션분야 전문성과 오랜 기간 축적된 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 서울패션스튜디오 운영사업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2010년 11억2천1백만원, 2011년 8억원, 2012년 8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13년에도 8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창업을 희망하는 신진디자이너 대부분이 제품양산 및 판로개척 등 마케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입주 경쟁률이 15:1에 달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예산구조

2012년 예산 : 850백만원

구 분	항 목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지원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개발비	155,000
	품평회 및 전문교육	70,000
	해외전시회 참가	75,000
	팝업스토어, 입점 등 마케팅	120,000
 시설 유지·관리	쇼룸 등 시설운영	280,000
기타	인건비 등 운영비	100,000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2011년 추진 실적

- 우수디자이너 지원에 따른 입주디자이너 경쟁률 '09년 대비 10배 상승
 - 경쟁률 1.5:1('09년) → 경쟁률 5:1('10년) → 경쟁률 15:1('11년)
- 입주디자이너 6명 현대백화점 매장 입점 지원('11.8월)
- 신진디자이너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공격적 판로개척으로 국내외 135개의 유통망 확보 (백화점, 전문편집매장 등)
 - 신세계·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 8회 운영 매출액 7억5백만원
 - 해외전시회 참가 6개사 계약추진액 3만4천불 및 시즌오프 개최 매출액 2,668만원
 - 스타마케팅 : 가수 소녀시대, 공효진 등 셀러브리티 의상협찬 481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언제까지 민간영역인 패션산업에 서울시가 개입할 예정인가.

답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 위주이지 공공부문의 역할은 많지 않음. 관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여 보호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좀더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039 번호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를 패션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망 신진디자이너의 업계 독립진출 성장발판 제공을 위한 신진디자이너 인큐베이 팅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2항에 의거 서울특 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치·규모 : 중구 신당동 유어스 5층 / 1,637㎡ ('09.12월 개관)

○ 입주대상 : 창업 5년 이내의 신진패션디자이너 50명

○ 입주기간 : 6개월(최장 24개월 입주가능)

- 매 6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입주기간 연장여부 결정(하위 10% 교체)

○ 지원내용 : 창작공간 및 전문교육 제공, 샘플제작,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주요시설 : 창작실(50개), 공동작업실, 포토스튜디오, 세미나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3 ~ 2016. 2)

○ 주요업무

- 창작스튜디오 입주디자이너 선발 및 입・퇴거 관리
- 입주디자이너 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입주디자이너 성과평가 및 전문교육 실시
- 정규 졸업디자이너 사후과리 프로그램 운영
- 창작스튜디오 창작실, 공동작업실 등 시설 및 장비 관리
- 소요예산 : 850,000천원(2012) 820,000천원(2013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
 - 2012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문화산업과-855, 2012. 2. 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09.4.13 ~ 2012.2.28(3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2012.3.1 ~ 2013.2.28(1년, 주식회사 PFIN)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는 유망 신진패션디자이너의 효과적 창작환경 제공 및 신생 디자이너 브랜드를 위한 실질적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업계 독립진출 성 장발판 제공을 위한 신진패션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 청년 패션인력의 창업 활성화 및 브랜드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패션분야 전문성 및 오랜 기간 축적된 업계 자체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업임.

○ 또한, 입주디자이너 전담인력 상시배치를 통한 효과적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디자이너 맞춤 밀착지원이 가능한 진단·컨설팅이 필요하므로 패션업계 전 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u>디자인</u>
 (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법 링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나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09.07.30)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29)